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2. .
발 의 자	이선우 의원 외 6명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 .

발의자 : 이선우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의원(7인)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해 시 차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3~4조)
- 다. 재정지원(안 제5조)
-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마. 관련기관 협조 및 협력체제 구축(안 제7~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미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세부 계획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과 등록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범죄피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소요가 예상됨(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범죄피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 현행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 시행하고 있어 추가 소요예산 미 발생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서기 장정환(054-480-5134)